제81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환경부)	1.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강화)'21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변경고시	1.비중요
2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안(고용노동부)	1.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강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와 기숙사 시각자료 제공	1.비중요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절차(강화) 수소버스 전복안전성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인정,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기술기준 등	1.비중요
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감리자의 하도급자 자격 적정성 검토 등 관리의무(강화) "5의2.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확인" 추가	1.비중요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1.에너지계획 수립(신설) ㅇ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율이 25%이상 되도록 온실가스 저감계획 제시 2.친환경 건축 활성화(신설) ㅇ「산업입지법」개정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의무화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우량(그린3등급)이상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1++)을 만족하도록 규정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1.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신설) 제7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요양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그 밖에 공단이 1호와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학생연구자의 범위(신설)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로서 졸업하기 전에 수행하던 연구 개발과제를 상위 학위과정의 시작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마련(신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	1.비중요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교육부)	1.대안교육기관의 시설·설비기준 등(신설)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설비기준 등 2.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신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3.교원의 자격 요건(신설) 교원의 자격 요건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수입식품 수입 판매업자 등록취소 기준 신설(강화) ①영업소 출입·검사 수거, 위해 수입식품등 압류·폐기 거부 시 행정제재 신설 ②위해 수입식품 회수 ·폐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미 이행 시 행정제제 신설 ③위해 수입식품등 영업자 회수 미이행 또는 회수계획 미보고 시 행정제제 신설	
10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송유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기, 기준 및 방법 등 구체화(신설) o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후 매 5년 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o 진단을 받은 경우 당해 년도 안점검사 면제 o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와 계획서 제출, 진단결과 보고 o 개선조치 계획서 및 조치결과 제출	1.비중요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림청)	1.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신설(신설) 양성과정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신설	1.비중요
1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보고양식 마련 및 제출서류 규정(신설) o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o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의 투자현황 및 출자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시기,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호~제14호 신설)	1.비중요
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금융위원회)	❶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예: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2-24조제1항제4호라목) * 해외주가지수, 환율,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원자재지수 등 - 외화 유동자산 등은 단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 *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 크레딧라인, 통화스왑, 미국 국공채 등 ❷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일정수준 까지만 편입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2-24조제1항제4호라목) ❸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1·3개월)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되, 규제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시행세칙에 위임(안 제3-41조의2)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범위 및 기준(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해양수산부)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정비범위 (별표 1의2) -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비업 대상 선종 및 정비범위를 마리나선박 중 모터·고무보트 및 요트의 기관계통으로 한정 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기준(안 제3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해 인력기준, 작업장 면적·사용권 등 등록요건 마련 - 주요기준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보유인력 1명 이상, 20㎡ 이상의 작업장(공구창고 포함) 확보 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신설)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부정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대여, 자격 정지기간 중 정비 수행 등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 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3년 이하)에 대한 상세기준 및 절차 마련	2.비중요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계획 등 보고의무(신설)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함.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기준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기준 설정(강화) 마리나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별표1)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별표2)의 영업정지 등 누적차수 산정기준 마련	
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정보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시행령 제8조)(신설) o '21.6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이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준을 마련	1.중요